
외국인투자 관련 조세정책 동향

[2022년 2분기]

2022. 5.

본 자료는 외국인투자자가 알아야 할 2022년 2분기 세금 신고제도 및 국제조세분야 세법개정사항을 중심으로 작성한 것입니다.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KOTRA 종합행정지원센터 투자종합상담실 국세청 파견관 (☎ 02-3497-1059)에게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목 차



I. 주요 세금 신고 제도(2분기)	1
1. 외국인 종합소득세 등 신고	1
2. 해외금융계좌 신고	5
3.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에 대한 자료 제출	8
II. 세법개정사항(국제조세 분야)	11
1. 주요 내용	11
2. 상세 내용	14

I. 주요 세금 신고 제도

1 외국인 종합소득세 등 신고 (5.1~5.31)

2021년 중 소득이 발생한 외국인 거주자는 2022.5.31.까지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

□ (개요) '21년 중 소득이 발생한 외국인 거주자*는 내국인 거주자와 동일하게 '22.5.31.(화)까지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소득세법 §1의2①)

○ 종합소득세란 개인이 1년 동안 경제활동으로 얻은 각종 소득을 종합하여 납부하는 세금으로 신고소득 범위는 이자 및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연말정산자 및 일용근로소득 제외), 연금소득, 기타소득이다.

○ 개인지방소득세는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로 부과하는 세금이며 종합소득세의 10%를 신고·납부한다.

○ 소득세는 '21년 중에 휴·폐업하였거나 적자가 난 경우,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신고하여야 하며, 만약 납부 할 세금이 있음에도 이를 신고·납부 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이 있다.

○ 아울러, 국내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으나 올해 2월에 연말정산을 하지 못하였거나, 연말정산 시 공제항목을 누락한 외국인 근로자는 이번 신고기간에 세금을 정산하여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다.

□ (신고방법)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및 모바일 손택스 등을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신고서 서식을 작성하여 관할세무서 등에 제출

□ (신고지원) 우리말이 서툰 외국인 납세자를 위하여 안내서비스 제공

○ 국세청 영문 누리집에서 「종합소득세 영문 안내책자」 (Individual income tax Guide) 제공 및 「외국인 전용 영어 상담전화」 (☎1588-0560)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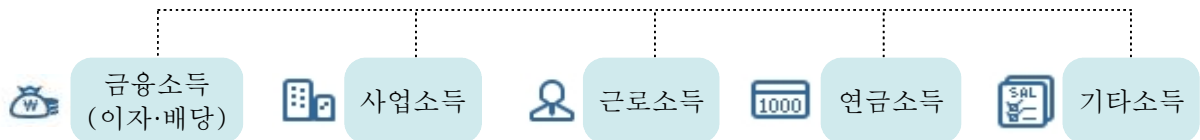
붙임 :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주요내용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안내

1 신고 개요

- 종합소득세란 1년 동안 경제활동으로 얻은 각종 소득을 종합하여 납부하는 세금으로 '21년에 종합소득이 있는 외국인 거주자는 내국인과 동일한 방법으로 그 과세표준을 '22.5.31.(화)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해야 한다.

< 신고대상 소득 >



- 또한, 비거주자로서 한국 내에 국내사업장이 있거나 부동산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다.
-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 확인서를 첨부하여 '22.6.30.(목)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 업종별 '21년 귀속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소득세법 §70의2)

①도·소매 등 15억 원, ②음식·숙박업 등 7.5억 원, ③임대·서비스업 등 5억

2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예외자

- ① 근로소득만 있는자로서 소속회사나 납세조합을 통하여 연말정산을 한 경우,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확정신고 필요
가. 두 군데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으나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지 않은 경우
나. 국내 근로소득의 대가를 해외 본사 등으로부터 지급 받은 경우
- ② 퇴직소득과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인 ①보험모집인, ②방문판매원, ③후원방문판매원, ④음료품배달판매원이 받는 사업소득(②~④는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 한 경우)
- ③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④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 (신고방법)

구 분	접근 경로
 홈택스 전자신고	홈택스(www.hometax.go.kr) >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모바일 전자신고	홈택스 앱설치 > 로그인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세무대리인	장부작성 등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신고
 서면신고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서 신고서 서식을 내려받아 서식 작성 후 관할 세무서에 우편접수하거나 민원실에 직접방문 접수

□ (종합소득세 세액계산 방법)

1단계 종합소득금액	<u>소득별 수입금액</u> <u>(-)소득별 필요경비</u> = 종합소득금액	○ 사업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 ○ (필요경비) - 장부 기장 사업자 : 장부 기록 필요경비 - 장부 미기장 사업자: 업종별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																											
2단계 과세표준	<u>종합소득금액</u> <u>(-)소득공제</u> = 과세표준	○ 인적공제 - 기본공제(본인·배우자·부양가족) - 추가공제(경로우대, 장애인 등) ○ 연금보험료 공제 ○ 특별소득공제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만 적용 - 보험료공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등																											
3단계 산출세액	<u>과세표준</u> <u>(×) 세율</u> = 산출세액	○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후 누진공제금액을 차감 <table border="1"> <thead> <tr> <th>과세표준 구간</th><th>세율</th><th>누진공제</th></tr> </thead> <tbody> <tr> <td>1,200만 원 이하</td><td>6%</td><td>-</td></tr> <tr> <td>1,200만 원 초과 ~ 4,600만 원 이하</td><td>15%</td><td>1,080,000원</td></tr> <tr> <td>4,6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td><td>24%</td><td>5,220,000원</td></tr> <tr> <td>8,800만 원 초과 ~ 1억5천만 원 이하</td><td>35%</td><td>14,900,000원</td></tr> <tr> <td>1억5천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td><td>38%</td><td>19,400,000원</td></tr> <tr> <td>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td><td>40%</td><td>25,400,000원</td></tr> <tr> <td>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td><td>42%</td><td>35,400,000원</td></tr> <tr> <td>10억 원 초과</td><td>45%</td><td>65,400,000원</td></tr> </tbody> </table>	과세표준 구간	세율	누진공제	1,200만 원 이하	6%	-	1,200만 원 초과 ~ 4,600만 원 이하	15%	1,080,000원	4,6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24%	5,220,000원	8,800만 원 초과 ~ 1억5천만 원 이하	35%	14,900,000원	1억5천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38%	19,400,000원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40%	25,400,000원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42%	35,400,000원	10억 원 초과	45%	65,400,000원
과세표준 구간	세율	누진공제																											
1,200만 원 이하	6%	-																											
1,200만 원 초과 ~ 4,600만 원 이하	15%	1,080,000원																											
4,6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24%	5,220,000원																											
8,800만 원 초과 ~ 1억5천만 원 이하	35%	14,900,000원																											
1억5천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38%	19,400,000원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40%	25,400,000원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42%	35,400,000원																											
10억 원 초과	45%	65,400,000원																											
4단계 결정세액	<u>산출세액</u> <u>(-)세액공제</u> = 결정세액	○ 세액공제 - 기장세액·외국납부세액·배당세액·재해손실세액·전자신고 - 보험료·의료비·교육비 등 세액공제 등 (근로소득자만 적용)																											
5단계 납부(환급)할 세액	<u>결정세액</u> <u>(+)가산세</u> <u>(-)기납부세액</u> = 납부(환급)할 세액	○ 가산세 - 무신고·납부지연·증빙불비·무기장 가산세 등 ○ 기납부세액 - 중간예납세액·원천징수된 세액·수시부과세액 등																											

※ 세액계산 사례

과세표준이 15,000,000원인 외국인 거주자의 종합소득세

$720,000 + (15,000,000 - 12,000,000) \times 15\% = 1,170,000\text{원}$

□ (신고안내 서비스)

유 형	경 로
 전화 상담(영어)	1588-0560, 오전 9:00 ~ 오후 6:00(11:30~1:00 제외)
 전화 상담(한국어)	국번없이 126번 > 5번 (종합소득세 상담)
 인터넷 상담	www.nts.go.kr/english/main.do > Help Desk > Q&A
 종합소득세 영문 안내책자	www.nts.go.kr/english/main.do > Resources > Publication > Individual Income and Benefit guide for Foreigners 2022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안내

- (신고개요) '20. 1. 1.부터 개인지방소득세*를 시·군·구청에 별도로 신고하는 지방자치단체 신고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 과세표준은 종합소득세와 동일하고 세율은 0.6 ~ 4.5%(종합소득세의 10분의 1)

- (신고지원) 기관간 시스템 연계로 개인지방소득세도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와 지자체 위택스(www.wetax.go.kr) 실시간 연계

- PC 홈택스 및 모바일 손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추가 인증 없이 위택스로 바로 이동하게 되고,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서가 자동으로 채워져 원클릭으로 신고할 수 있다.



- 또한 전용 상담 콜센터(☎1661-8880, 한국어) 운영으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신속한 민원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 보도자료('21.4.3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중에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계액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초과하였다면 관련 해외계좌정보를 '22.6.30.까지 신고

- (신고개요) 거주자 및 내국법인(외투법인 포함)이 '21년 중에 보유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계액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초과하였다면 관련 계좌정보를 '22.6.30.(목)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 신고 대상 해외금융계좌는 해외금융회사와 금융거래 및 이와 유사한 거래를 위하여 개설한 계좌를 말하며, 해외금융회사에는 내국법인의 국외지점은 포함되나,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은 제외된다.
 - 아울러, 2020년 12월 세법 개정으로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가상자산 거래를 위하여 해외가상자산사업자 등에 개설한 해외계좌가 있는 경우 동 계좌정보를 2023년 6월부터 신고('22년 계좌 보유분)하여야 한다.
- (신고방법) 신고의무자는 오는 6월 30일까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및 모바일 손택스를 통해 쉽고 편리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으며,
 - 신고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된 안내책자나 국세상담센터(☎ 국번없이 126번)를 이용할 수 있다.
- 국세청은 매년 신고가 종료되면 국가 간 금융정보 교환자료, 타 기관 수집자료 등 각종 정보자료를 바탕으로 적정신고 여부를 정밀 검증하고 있다.
 - 미(과소)신고자에게는 과태료(미·과소신고 금액의 10%~20%)가 부과되며, 미(과소)신고금액이 연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형사처벌 및 명단공개 대상이 될 수 있으니 기한 내 반드시 신고하여야 한다.

붙임 : 해외금융계좌 주요 신고 내용

제도 개요

- (해외금융계좌 신고)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다음 연도 6월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는 제도

* (관련법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2~제57조, 제62조

-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며, 내국법인**은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을 말한다.

*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 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

** 외국인투자법인은 내국법인(본점이 한국에 있음)에 속하므로 신고의무 대상임.

'22년 신고 안내

- (신고요건)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21년 중에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계액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넘는 경우 관련 계좌* 정보를 '22.6.30.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

* 계좌보유자의 성명·주소등 신원 정보, 계좌번호, 금융회사 이름, 보유계좌 잔액 등

- (신고의무면제자)

구분	신고의무 면제자 요건
외국인 거주자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10년(2012.1.1. ~ 2021.12.31.)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경우
재외국민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1년(2021.1.1.~2021.12.31.)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83일 이하인 경우
금융회사 등 기타 면제기관	금융회사 등 및 다른법령에 따라 국가의 관리·감독이 가능한 기관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중 어느 하나의 신고를 통해 본인의 모든 해외금융계좌 정보가 제출된 자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 **(신고대상)** 해외금융회사에 개설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모든 금융자산을 신고해야 하며, 예·적금 뿐만 아니라,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보험상품 등을 모두 포함

○ 해외금융회사란 국외에 소재하는 금융회사*로서 우리나라 은행 및 증권회사 등이 설립한 해외 지점은 포함되지만, 외국계 은행 등이 우리나라에 설립한 국내지점은 제외된다.

* 금융업, 보험·연금업, 금융·보험 관련 서비스업 및 이와 유사한 업종을 영위하는 회사

□ **(잔액산출방법)** 해외금융계좌의 매월 말일 잔액은 계좌에 보유한 각자산을 평가하고, 그 평가금액을 해당 표시통화의 환율로 환산한 후 자산별 금액을 합계하여 산출한다.

*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일별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

□ **(가상자산 계좌)** 2020년 12월 세법개정으로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 및 그와 유사한 자산의 거래를 위하여 해외가상자산 사업자 등에 개설한 계좌*는 2022.1.1. 이후 신고 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 신고대상('23년 6월 최초 신고) 포함된다.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가상자산 및 이와 유사한 자산의 거래를 위하여 국외에 같은 조 제1호 하목의 가상자산사업자 및 이와 유사한 사업자에 개설한 계좌

□ **(신고방법)** 「해외금융계좌신고서」(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별지 제45호 서식)를 작성하여 서면신고하거나,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모바일 손택스를 이용하여 전자신고 할 수 있다.

□ **(과태료)** 신고기한 내에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 한 경우 미(과소)신고 금액의 20% 한도내에서 과태료 부과되며, 미(과소)신고금액이 연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형사처벌 및 명단공개 대상이 될 수 있다.

미(과소)신고금액	과태료
20억 원 이하	해당 금액 × 10%
20억 원 초과 ~ 50억원 이하	2억원 + (20억 원 초과 금액 × 15%)
50억 원 초과	Min(20억 원, 6억 5천만원 + (50억 원 초과 금액 × 20%))

‘20사업연도 연결재무제표 매출액이 1조원(7억5천만유로)을 초과하는 다국적 기업그룹의 ▲국내 최종모회사 및 ▲국외에 최종모회사가 있는 국내관계회사는 ‘22.6.30.까지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에 대한 자료’를 제출(12월말 법인 기준)

□ 제도개요

- 다국적기업 그룹 내 어떤 기업이 어느 나라에서 국가별보고서를 제출할지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제출하는 제도(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35②)

□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 관련 자료」 제출 의무자

- ① ‘20년 연결재무제표 매출액이 1조원을 초과하는 다국적기업 그룹으로서 최종모회사가 국내에 소재하는 경우 : 국내 최종모회사
- ② ‘20년 연결재무제표 매출액이 7억5천만유로*를 초과하는 다국적기업 그룹으로서 최종모회사가 국외에 소재하는 경우 : 그 그룹에 속하는 국내 관계회사(외국법인 국내사업장 포함)

* 외국 최종모회사 국가에서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 해당법령으로 정한 기준금액

□ 제출기한 및 방법

- 각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예를 들어 사업연도 종료일이 ‘21.12.31.인 경우 ‘22.6.30.까지 신고
- 홈택스의 신고/납부>일반신고>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에 대한 자료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신고서식을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에 직접 제출

□ 미제출시 불이익

- 과태료 부과는 없으나, ‘국내 관계회사’가 미제출하는 경우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2개월 이내에 「국가별보고서」를 직접 제출해야 한다.

* ‘국내 최종모회사’는 사전자료 제출과 무관하게 국가별보고서 제출

□ 국가별보고서 제출 의무자

- ① '20년 연결재무제표 매출액이 1조원을 초과하는 다국적기업 그룹*으로서 최종모회사가 국내에 있는 경우 : 국내 최종모회사

* 서로 다른 국가(고유한 세법이 적용되는 지역을 포함한다)에서 과세대상이 되는 사업을 수행하는 집단으로서 소유권 또는 지배력을 통해 관련된 기업들의 집단

- ② '20년 연결재무제표 매출액이 7억5천만유로*를 초과하는 다국적기업 그룹으로서 최종모회사가 국외에 있는 경우 : 국내 관계회사

* 외국 최종모회사 국가에서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 해당법령으로 정한 기준금액

※ (제출의무 면제)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에 대한 자료」를 제출 기한 내 제출한 다음의 경우는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 면제

- ㉠ 최종 모회사가 소재하는 국가의 법령 상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가 있고 그 국가별보고서가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에 따라 교환되는 경우
- ㉡ 다른 국내관계회사가 국가별보고서를 대표하여 제출하는 경우
- ㉢ 최종모회사가 제3국에 소재하는 관계회사로 하여금 해당 소재지국에 국가별보고서를 대리 제출하도록 하고 그 국가별 보고서가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에 따라 교환되는 경우

□ 국가별보고서 작성 범위 및 제출기한

-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는 소속된 다국적기업 그룹의 관계회사들에 대하여 국가별보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부터 12개월 이내에 제출

□ 관련법령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붙임2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에 대한 자료」 서식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에 대한 자료

1. 제출인

① 법인명(상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소재지(주소)		④ 주업종(업종코드)	
⑤ 대표자		⑥ 사업연도(과세기간)	. . . ~ . . .

2.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

⑦ 법인명(상호)		⑧ 사업자등록번호	
⑨ 국가명(국가코드)		⑩ 소재지국 납세자번호	
⑪ 소재지(주소)		⑫ 주업종(업종코드)	
⑬ 대표자(성명)		⑭ 사업연도(과세기간)	. . . ~ . . .
⑮ 전자우편주소			
⑯ 직전 연도 연결 매출액	(통화코드)	(금액)	

⑰ 제출의무자의 지위

- [] 1. 최종모회사가 국내에 소재하는 경우 그 국내의 최종모회사
- [] 2. 최종모회사가 외국에 소재하는 경우로서 그 소재 국가의 법령상 국가별보고서 작성의무가 없는 경우 국내 관계회사
- [] 3. 최종모회사가 외국에 소재하는 경우로서 그 소재 국가와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는 등의 사유로 국가별보고서 교환이 되지 않는 경우 국내관계회사
- [] 4. 최종모회사가 외국에 소재하는 경우 그 외국의 최종모회사
- [] 5. 최종모회사가 외국에 소재하는 경우로서 위 2 또는 3 등의 사유로 제3국에 소재하는 관계회사로 하여금 해당 소재지국에 국가별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그 외국 관계회사(외국 대리모회사)

3. 제출인과 동일한 연결재무제표에 속하는 국내 납세의무자 목록

⑰ 일련 번호	⑲ 법인명(상호)	⑳ 사업자등록번호	㉑ 대표자 (성명)	㉒소재지	㉓주업종 (업종코드)	㉔사업연도 (과세기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에 대한 자료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제출자

세무서장 귀하

Ⅱ. 세법개정사항(국제조세분야)

1 주요 내용

가.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현황 자료제출 의무 신설(법인법 § 94의2)

- 외국법인이 연락사무소를 설치한 후 사실상 고정사업장으로 운영하여 세부담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연락사무소 현황* 자료제출 의무 신설

* 대표자 인적사항, 외국 본사 현황, 국내거래처, 국내 다른 지점 현황 등

< 고정사업장과 연락사무소 비교 >

구 분	고정사업장	연락사무소
개 념	사업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 (지점, 공장, 창고 등)	외국 본사를 위한 예비적·보조적 활동을 위한 장소 (광고선전, 시장조사, 정보수집 등)
과세여부	○	X

나. 외국법인 연락사무소에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의무 부과 (부가령 § 99)

다. 외국법인의 국제거래 관련 자료 제출기한 연장(법인령 § 130의④)

- 외국법인 국내사업장과 국외 본점 및 다른 지점간 거래에 따른 국내원천 소득금액 계산 시 관련서류(내부거래명세서, 경비배분계산서 등) 제출기한을 법인세 신고기한 이내에서 사업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로 연장

라. 해외부동산에 대한 자료 제출 의무 강화(국조법 § 58①)

- 역외 세원관리 강화를 위해 기존 취득·투자운용(임대)·처분 내역 외에 해외부동산 「보유」 내역에 대해서도 자료제출 의무 부과

마. 국제거래자료 기한 후 제출 등에 따른 과태료 감경기준 신설(국조령 § 100⑤)

- 과태료 부과 처분 전에 국제거래자료(개별·통합·국가별 보고서 등)를 수정 제출하거나 기한 후 제출하는 경우 제출 시기에 따라 30~90% 과태료 감경

정상가격 산정 관련

바. 정상이자율 산정방법에 신용부도스왑 및 경제적 모델 분석방법 추가(국조령 § 11②)

-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금전대차거래에서 적용되는 정상이자율 산출방법으로 거래금액 및 국제금융시장의 실세이자율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외에 ①신용부도스왑 거래의 가산율, ②합리적 경제모형을 활용하여 계산한 이자율 등을 추가

사. 금전대차거래 정상가격 산출 시 비재무적 사항 포함(국조칙 § 2의2)

- 금전대차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 시 채무자의 신용등급은 과거의 재무정보 외에도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미래 재무정보, 업종 및 기술수준, 시장지위 등 비재무적 정보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도록 함.

아. 간주정상이자율 산정 기준 변경(국조칙 § 3)

- 2022년부터 런던은행 간 대출금리 고시가 중단됨에 따라 정상이자율로 간주되는 기준금리를 차입통화별 지표금리로 변경

자. 비교가능 거래대상 선정 시 손실발생 기업 포함(국조령 § 15⑦)

- 경기침체 등 경제적 여건에 따라 손실이 발생한 기업도 정상가격 산출 시 비교 가능한 거래대상에 산정할 수 있도록 함.

차. 지급보증 거래의 정상가격 산정 시 고려사항 보완(국조칙 § 5)

- 지급보증에 대한 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정 시 신용등급 관련 고려사항에 다국적기업그룹의 관계회사로서 누리는 암묵적 지원을 추가함

카. 소득대비 과다이자비용의 조정소득금액 범위 및 손금불산입 순서 명확화(국조령 § 54④,⑤)

- 소득대비 과다이자비용 조정소득금액 산정 시 조정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 '0'으로 간주하고, 이자비용 손금불산입 순서는 ①높은 이자율 > ②최근 차입일 > ③차입금 규모비율에 따라 안분 순으로 명확화

외국인 근로자 관련

타.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기간 연장(조특법 § 18)

- 외국인 우수 기술인력 유치를 위하여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을 '23.12.31.까지(←'21.12.31) 2년 연장

* 석사 학위 등 일정요건을 갖춘 외국인기술자에 대하여 소득세액의 50% 감면

파.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18)

- 외국인 우수 인재 유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3.12.31.까지(←'21.12.31) 2년 연장

* 국내 최초 근로일로부터 5년간 종합소득세율 대신 단일세율(19%) 선택 가능

하. 외국법인소속 파견근로자 원천징수 요건 개선(소득령 § 207의10)

- 외국법인 소속 근로자를 사용하는 내국법인이 원천징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근로대가 요건 기준은 ①해당 외국법인과 내국법인 간 계약 상 근로대가의 합이 20억원을 초과하거나 ②직전사업연도 실제 근로대가의 합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구체화 함

거. 외국인근로자 사택제공이익 과세 유예기간 연장(소득령 부칙 § 19②)

- 외국인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외국인 근로자 사택제공이익 등에 대한 과세유예기간을 '23.12.31.까지로 연장 함

너. 납세조합 세액공제* 한도 및 적용기한 신설(소득법 § 150)

* 세원포착이 어려운 외국법인 등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자 등이 납세조합을 결성하여 원천징수·납부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조합원에 대해 소득세액의 5% 세액공제

- 고소득자에 대한 과도한 혜택 방지 등을 위해 조합원 1인당 연 100만원 공제 한도 및 '24.12.31.까지 적용기한 신설

2

상세 내용

1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현황자료 제출의무 신설

(법인세법 제9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33조의2)

종 전	개 정
<신 설>	■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현황자료 제출 의무 부여 ○ (제출내역)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연락사무소 현황명세서 - 연락사무소 기본현황, 임차, 직원, 운영자금 현황 - 외국법인 본사, 국내 투자법인, 지점, 계약대리점 현황 - 기타 연락사무소의 현황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제출시기) 다음연도 2월 10일 ○ (작성기준일) 매년 12월 31일 ■ 비영업적 기능의 정의 ○ 업무연락, 시장조사, 정보수집 등

(2022.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대한 현황자료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2

외국법인 연락사무소에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무 부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9조)

종 전	개 정
■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없이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의무제출 대상 ○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조합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중 소득·법인세 납세의무자 ○ 비영리법인, 특별법인 ○ 각급 기성회, 후원회	■ 의무제출대상 추가 ○ (좌 동)
< 추 가 >	○ 외국법인의 연락사무소

(2022.7.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3

외국법인의 국제거래 관련 자료 제출기한 연장 (법인세법 시행령 제130조 제4항)

종 전	개 정
■ 외국법인의 내부거래* 자료 제출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국외 본점 및 다른 지점 간 거래 ○ (제출서류) 내부거래명세서, 경비배분계산서 등 ○ (제출기한) 법인세 신고기한 이내	■ 자료 제출 기한 연장 ○ 사업연도 종료일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2022.2.15. 전에 개시한 과세기간에 대한 자료제출의무가 발생한 경우로서 2022.2.15. 당시 종전 규정에 따른 제출기한이 지난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

4

해외부동산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강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제2항, 제63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

종 전	개 정																																				
■ 해외부동산 자료제출 의무 ○ (제출대상) 해외부동산을 취득·투자운용(임대)·처분하는 거주자 및 내국법인 <table border="1" data-bbox="167 1240 756 1433"> <thead> <tr> <th>구 분</th><th>제출내용</th></tr> </thead> <tbody> <tr> <td>취득시</td><td>취득내역</td></tr> <tr> <td>투자운용(임대)시</td><td>투자운용내역</td></tr> <tr> <td>처분시</td><td>처분내역</td></tr> </tbody> </table> <추 가> ○ (제재) 미제출·거짓 제출 시 과태료 부과 <table border="1" data-bbox="167 1610 756 1803"> <thead> <tr> <th>구분</th><th>과태료</th></tr> </thead> <tbody> <tr> <td>취득시 미제출</td><td>취득가액의 10%</td></tr> <tr> <td>운용(임대)소득 미제출</td><td>운용(임대)소득의 10%</td></tr> <tr> <td>처분시 미제출</td><td>처분가액의 10%</td></tr> </tbody> </table> <추 가>	구 분	제출내용	취득시	취득내역	투자운용(임대)시	투자운용내역	처분시	처분내역	구분	과태료	취득시 미제출	취득가액의 10%	운용(임대)소득 미제출	운용(임대)소득의 10%	처분시 미제출	처분가액의 10%	■ 자료제출 의무대상 추가 ○ 해외부동산의 보유 포함 <table border="1" data-bbox="805 1240 1407 1480"> <thead> <tr> <th>구 분</th><th>제출내용</th></tr> </thead> <tbody> <tr> <td>취득시</td><td>취득내역</td></tr> <tr> <td>투자운용(임대)시</td><td>투자운용내역</td></tr> <tr> <td>처분시</td><td>처분내역</td></tr> <tr> <td>보유시</td><td>보유내역</td></tr> </tbody> </table> ○ 보유내역 미제출·거짓 제출 시 과태료 부과 <table border="1" data-bbox="805 1610 1407 1850"> <thead> <tr> <th>구분</th><th>과태료</th></tr> </thead> <tbody> <tr> <td>취득시 미제출</td><td>취득가액의 10%</td></tr> <tr> <td>운용(임대)소득 미제출</td><td>운용(임대)소득의 10%</td></tr> <tr> <td>처분시 미제출</td><td>처분가액의 10%</td></tr> <tr> <td>보유시 미제출</td><td>취득가액의 10%</td></tr> </tbody> </table>	구 분	제출내용	취득시	취득내역	투자운용(임대)시	투자운용내역	처분시	처분내역	보유시	보유내역	구분	과태료	취득시 미제출	취득가액의 10%	운용(임대)소득 미제출	운용(임대)소득의 10%	처분시 미제출	처분가액의 10%	보유시 미제출	취득가액의 10%
구 분	제출내용																																				
취득시	취득내역																																				
투자운용(임대)시	투자운용내역																																				
처분시	처분내역																																				
구분	과태료																																				
취득시 미제출	취득가액의 10%																																				
운용(임대)소득 미제출	운용(임대)소득의 10%																																				
처분시 미제출	처분가액의 10%																																				
구 분	제출내용																																				
취득시	취득내역																																				
투자운용(임대)시	투자운용내역																																				
처분시	처분내역																																				
보유시	보유내역																																				
구분	과태료																																				
취득시 미제출	취득가액의 10%																																				
운용(임대)소득 미제출	운용(임대)소득의 10%																																				
처분시 미제출	처분가액의 10%																																				
보유시 미제출	취득가액의 10%																																				
※ 과태료 한도: 1억원	※ 과태료 한도: 1억원																																				

(부동산 보유명세서 제출의무) 2022.1.1. 이후 자료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과태료 부과) 2023.1.1. 이후 자료제출 의무를 불이행하는 분부터 적용

종 전	개 정																										
■ 국제거래자료* 제출 관련 과태료 * 통합·개별기업보고서, 국가별 보고서 등 ○ (제출기한) 사업연도 종료 후 12개월 이내 ○ (과태료) 제출기한 내 미제출 또는 거짓제출 시 1억원 한도로 부과 <table border="1"> <thead> <tr> <th>대상자료</th><th>과태료</th></tr> </thead> <tbody> <tr> <td>개별·통합기업보고서 국가별 보고서</td><td>보고서별 3,000만원</td></tr> <tr> <td>국제거래명세서</td><td>국외특수관계인별 500만원</td></tr> </tbody> </table> < 신 설 > ※ 기한 후 자료제출 또는 수정 제출에 따른 과태료 감경기준 없음	대상자료	과태료	개별·통합기업보고서 국가별 보고서	보고서별 3,000만원	국제거래명세서	국외특수관계인별 500만원	■ 국제거래자료 수정·기한 후 제출에 따른 과태료 감경 규정 신설 (좌 동) ○ 과태료 부과 전에 국제거래 자료를 수정 제출·기한 후 제출 시 30~90% 과태료 감경 (단, 과세당국의 과태료 부과를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는 제외) － 기한 내 제출 후 수정제출 <table border="1"> <thead> <tr> <th>수정 제출한 시점</th><th>과태료 감경율</th></tr> </thead> <tbody> <tr> <td>6월 이내</td><td>90%</td></tr> <tr> <td>6월 초과 1년 이내</td><td>70%</td></tr> <tr> <td>1년 초과 2년 이내</td><td>50%</td></tr> <tr> <td>2년 초과 4년 이내</td><td>30%</td></tr> </tbody> </table> － 기한 후 제출 <table border="1"> <thead> <tr> <th>기한 후 제출시점</th><th>과태료 감경율</th></tr> </thead> <tbody> <tr> <td>1월 이내</td><td>90%</td></tr> <tr> <td>1월 초과 6월 이내</td><td>70%</td></tr> <tr> <td>6월 초과 1년 이내</td><td>50%</td></tr> <tr> <td>1년 초과 2년 이내</td><td>30%</td></tr> </tbody> </table>	수정 제출한 시점	과태료 감경율	6월 이내	90%	6월 초과 1년 이내	70%	1년 초과 2년 이내	50%	2년 초과 4년 이내	30%	기한 후 제출시점	과태료 감경율	1월 이내	90%	1월 초과 6월 이내	70%	6월 초과 1년 이내	50%	1년 초과 2년 이내	30%
대상자료	과태료																										
개별·통합기업보고서 국가별 보고서	보고서별 3,000만원																										
국제거래명세서	국외특수관계인별 500만원																										
수정 제출한 시점	과태료 감경율																										
6월 이내	90%																										
6월 초과 1년 이내	70%																										
1년 초과 2년 이내	50%																										
2년 초과 4년 이내	30%																										
기한 후 제출시점	과태료 감경율																										
1월 이내	90%																										
1월 초과 6월 이내	70%																										
6월 초과 1년 이내	50%																										
1년 초과 2년 이내	30%																										

(2022.2.15. 이후부터 적용)

6

정상이자율 산정방법에 신용부도스왑 및 경제적 모델 분석방법 추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2항)

종 전	개 정
■ 금융거래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① 국조법 제8조 제1호부터 5호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재판매가격방법, 원가 가산방법, 거래순이익률 방법, 이익분할방법 ② ①의 적용이 어려운 경우 - 거래금액 및 국제금융시장의 실세이자율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추 가> <추 가>	■ 정상가격 산출시 활용가능 방법 추가 ① (좌 동) ② ①의 적용이 어려운 경우 다음 중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여 적용 - (좌 동) - 기초금융자산에 연계된 신용위험을 반영한 신용부도스왑계약의 가산율을 활용하여 계산한 이자율 - 무위험 이자율에 부도위험, 유동성, 만기,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 가산율을 더하여 계산한 이자율 (경제적 모델 활용)

(2022.2.15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자금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7

금전대차거래 정상가격 산출시 고려사항에 비재무적 사항 포함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2)

종 전	개 정
■ 금전대차 거래의 정상가격 산출시 고려사항 ○ 채무액, 채무의 만기, 채무의 보증여부, 채무자의 신용 정도 <신 설>	■ 채무자 신용정도 평가 시 고려사항 구체화 ○ (좌 동) ○ 채무자의 신용정도 평가 시 고려사항 - 과거 재무정보 외에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미래의 재무정보 - 국가, 지역, 업종, 기술수준, 시장지위, 기업군의 신용위험 등 비재무적 정보 - 평가 상향 요인으로 다국적기업그룹의 관계회사로서 누리는 암묵적 지원

(2022년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자금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8

간주정상이자율 산정 기준 변경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종 전	개 정														
■ 정상이자율로 간주되는 이자율 ○ (자금대여) 당좌대출이자율(연 4.6%)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제2항 ○ (자금차입) 12개월 만기 통화별 LIBOR 금리* + 1.5% * 런던 은행 간 대출이자율 - 단, LIBOR가 없는 통화의 경우 미국 달러화 기준 LIBOR 금리 + 1.5%	■ 간주정상이자율 기준 변경 ○ (좌 동) ○ 차입통화별 지표금리 + 1.5% <table border="1"> <thead> <tr> <th>통화</th><th>지표금리</th></tr> </thead> <tbody> <tr> <td>한국 KRW</td><td>한국무위험지표금리(KOFR)</td></tr> <tr> <td>미국 USD</td><td>미국 국채 담보익일물RP금리(SOFR)</td></tr> <tr> <td>유럽연합 EUR</td><td>은행의 익일물 무담보 차입금리(ESTR)</td></tr> <tr> <td>영국 GBP</td><td>은행의 익일물 무담보 차입금리(SONIA)</td></tr> <tr> <td>스위스 CHF</td><td>은행간 익일물 RP금리(SARON)</td></tr> <tr> <td>일본 JPY</td><td>금융기관간 익일물 무담보 콜거래금리(TONA)</td></tr> </tbody> </table> * 그 밖의 통화는 미국달러화 기준	통화	지표금리	한국 KRW	한국무위험지표금리(KOFR)	미국 USD	미국 국채 담보익일물RP금리(SOFR)	유럽연합 EUR	은행의 익일물 무담보 차입금리(ESTR)	영국 GBP	은행의 익일물 무담보 차입금리(SONIA)	스위스 CHF	은행간 익일물 RP금리(SARON)	일본 JPY	금융기관간 익일물 무담보 콜거래금리(TONA)
통화	지표금리														
한국 KRW	한국무위험지표금리(KOFR)														
미국 USD	미국 국채 담보익일물RP금리(SOFR)														
유럽연합 EUR	은행의 익일물 무담보 차입금리(ESTR)														
영국 GBP	은행의 익일물 무담보 차입금리(SONIA)														
스위스 CHF	은행간 익일물 RP금리(SARON)														
일본 JPY	금융기관간 익일물 무담보 콜거래금리(TONA)														

(2022.1.1. 이후 자금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9

비교가능 거래대상 선정 시 손실발생 기업 포함가능 근거 마련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7항)

종 전	개 정
■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적용시 고려사항 * 국외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 ○ 납세자의 사업환경 및 특수관계 거래분석,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선택 및 비교 가능 거래 선정 및 합리적인 차이조정 등 분석 ○ 경제적인 여건이나 사업전략 등 영향이 여러 해에 걸쳐 발생하는 경우 여러 사업 연도의 자료를 활용 가능 <추 가>	■ 정상가격 산출방법 적용 시 고려사항 추가 ○ (좌 동) ○ 경기침체 등 경제상황에 따라 손실이 발생한 기업도 비교가능 거래 대상으로 선정 가능

(2022.2.15. 시행일 이후 신고 또는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지급보증 거래의 정상가격 산정 시 고려사항 보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종 전	개 정
■ 지급보증 거래에 관한 정상가격 산출 시 고려사항 ○ (신용등급) 재무적·비재무적 정보 <추 가> ○ (예상부도율) 피보증인의 신용등급, 기업군의 자원가능성 ○ (보증금액 예상회수율) 피보증인의 재무상태와 유형자산의 규모, 산업의 특성, 담보제공 여부·시기·만기 등	■ 지급보증 거래 시 고려사항에 암묵적지원 추가 ○ (좌 동) - 평가 상향 요인으로 다국적기업그룹의 관계 회사로서 누리는 암묵적 지원 ○ (좌 동) ○ (좌 동)

(2022년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소득대비 과다이자자의 조정소득금액 범위 및 손금불산입 순서 명확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 제4항·제5항)

종 전	개 정
■ 소득대비 과다 이자지급금액 손금불산입 * 조정소득금액의 30%를 초과하는 순이자비용은 손금불산입 ○ 조정소득금액 =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 감가상각비 + 순이자비용 <단서 신설> ○ 손금불산입 순서 - 서로 다른 이자율이 적용되는 이자등이 함께 있는 경우: 높은 이자율 순서대로 적용	■ 소득대비 과다 이자지급 금액 손금불산입 규정 명확화 ○ (좌 동) - 단, 조정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 '0'으로 간주 ○ 이자율이 동일한 경우 손금 불산입 순서 명확화 - (좌 동) - 서로 같은 이자율이 적용되는 경우: 최근 차입일 우선 - 이자율·차입일 모두 같은 경우: 차입금 규모 비율에 따라 안분

(202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12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기간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종 전	개 정
■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대상) - 엔지니어링 기술 도입계약에 따른 기술제공자 - 외국인투자기업 R&D센터, 국내기업 부설 연구소 등에서 근무하는 연구원 ○(감면내용) 5년간 소득세 50% 감면* * 소재·부품·장비 특화선도기업 취업 시 3년간 70%+2년간 50% 감면 ○(적용기한) 2021.12.31. * 소재·부품·장비 특화선도기업 취업 시 '22.12.31.	■ 적용기한 연장 ○ (좌 동) ○(적용기한) 2023.12.31.

13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종 전	개 정
■ 외국인 근로자 과세특례 ○(적용대상) 외국인근로자 ○(특례내용) 종합소득세율 적용 대신 단일세율 적용 (근로소득 × 19%) * 비과세, 공제, 감면 및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음 ○(적용기간) 적용기한까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시작한 후 5년간 적용 ○(적용기한) 2021.12.31.	■ 적용기한 연장 ○ (좌 동) ○(적용기한) 2023.12.31.

외국법인 소속 파견근로자 원천징수 요건 개선

(소득세법시행령 제207조의10 제1항)

종 전	개 정
■ 외국법인 소속 국내 파견 고소득 근로자 소득 원천징수 ○ (원천징수의무자)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내국법인 ① (근로대가규모) 파견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근로대가의 합이 연간 20억원 초과 ② (기업규모) 대기업* *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1,500억원 또는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③ (업종) 항공운송업, 건설업,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적용기한 연장 ① 근로대가의 합이 연간 20억원 초과 기준 구체화 (㉓, ㉔ 중 어느 하나에 해당) ㉓ 파견외국법인과 계약 상 근로대가 합이 20억원 초과 ㉔ 직전연도 실제 근로대가의 합이 20억원 초과 ○ (좌 동)

(2022.4.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사용내국법인이 파견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부터 적용)

외국인근로자 사택제공 이익 과세유예기간 연장

(소득세법 시행령(제31442호) 부칙 제19조 제2항)

종 전	개 정
■ 단일세율 과세특례 적용 외국인 근로자 사택 제공이익 과세유예 ○ 2021.12.31.까지	■ 과세 유예기간 연장 ○ 2023.12.31.까지

종 전	개 정
■ 납세조합의 원천징수* * 세원포착이 어려운 업종의 납세자 등이 스스로 조합을 결성하여 원천징수·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조합원) 외국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이 있는 자 등 ○ (납세조합의 징수·납부의무) 조합원의 소득세를 매월 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납부 ○ (납세조합공제) 조합원에 대한 매월분 소득세액의 5%를 공제하고 징수 < 신 설 >	■ 납세조합 세액공제 한도 신설 ○ (좌 동) ○ 조합원 1인당 연간 100만원* 공제한도 신설 * 근로제공기간 등에 따라 월할 계산 ○ (적용기한) '24.12.31.

(2022.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작 성 자

▪ 투자종합상담실 국세청 파견관

박지현

KOTRA자료 22-068

외국인투자 관련 조세정책동향

2022년 2분기

발 행 인 | 유 정 열
발 행 처 | KOTRA
발 행 일 | 2022년 6월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헌릉로 13 (06792)
전 화 | 02-1600-7119(대표)
홈페이지 | www.kotra.or.kr
문 의 처 | 투자종합상담실
(02-3497-1059)
I S B N | 979-11-402-0312-3 (95320)



Copyright © 2022 by KOTRA.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의 저작권은 KOTRA에 있습니다.